L4ZPB273080PPPL001_1200001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2601.8) 상품요약서

● 상품특성 및 전달정보



상품특성	전달정보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납부자가 법인인 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장성보험이란, 만기시 환급금이 총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합니다.		저축성보험이란, 만기시 환급금이 총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금리연동형 보험이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이익률, 시장금리 등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부리이율이 변동되는 보험입니다.		최저(보증)이율이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부리이율입니다.
	갱신형 상품은 갱신시점의 나이 및 위험률 변경 등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병자보험은 일반보험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싸므로 건강한 일반인이 가입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간편심사보험은 일반보험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싸므로 건강한 일반인이 가입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실손형 담보는 2개 이상의 계약을 중복하여 가입하여도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각 계약이 비례분담하여 지급합니다.

● 문답식 상품해설 (Q & A)

Q) 이 상품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A)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2601.8)는 사업장의 주요 재물 및 배상책임 위험뿐만 아니라 사업주 및 종업원의 각종 상해, 비용 손해 등도 보장하는 통합 재물보험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이 상품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한 보험의 목적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A) 이 상품의 보험의 목적은 화재사고로 인한 손실이 가능한 것이므로 토지나 무형의 영업권, 지적재산권 등은 목적물이 될 수 없습니다.

Q) "영위업종적용" 보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A-1) 화재보험의 보험료 적용방식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가 있으며, 이 상품은 영위업종 방식에 따라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구분	보험료 적용방식
영위업종 방식	방화구획 내에 각 업종별 적용요율 중 최고요율이 어떤 업종인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 본인의 영위업종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요율업종 방식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설치 등에 의한 위험구획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건물 전체에 대하여 각 업종별 적용 요율 중 최고 요율을 건물 전체에 적용하고, 위험구획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는 위험 구획을 하나의 건물로 하여, 해당업종별 요율을 적용합니다.

A-2)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2601.8)에서 영위업종 방식에 따라 보험료가 적용되는 보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재손해(영위업종적용) 보통약관
-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 특수건물 풍수재손해(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영위업종적용)(15 일면책) 특별약관
- 구내폭발·파열손해(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 구내냉동(냉장)물손해(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 차량 및 항공기로 인한 손해(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 전기위험(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 비특수건물 유리 및 부착간판 풍수재손해(영위업종적용) (15 일면책) 특별약관
- 점포휴업손해(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 특수건물 신체손해 배상책임(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 특수건물 화재대물 배상책임(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 건물(화재) 복구비용지원(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 시설(화재) 수리비용지원(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 기계(화재) 수리비용지원(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Q) 이 상품에서 지급보험금 계산 시 비례 보상하는 보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A)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2601.8)의 보장 중 비례보상형을 선택한 경우 비례 보상하는 보장은 아래와 같으며, 보장에 따라 보험금 계산방법이 다르므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구분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미만일 경우 비례보상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경우 비례보상
해당 보장	· 기본계약 : 화재손해(영위업종적용)(단, 동산 제외), 잔존물제거비용 · 특수건물 풍수재손해(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영위업종적용)(15일면책) 특별약관 · 구내폭발·파열위험(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단, 동산 제외) ·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단, 동산 제외) · 차량 및 항공기로 인한 손해 특별약관(영위업종적용)(단, 동산 제외) · 전기위험(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 기본계약 : 화재손해(영위업종적용) 中 동산 · 구내폭발·파열위험(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中 동산 ·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中 동산 · 차량 및 항공기로 인한 손해(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中 동산 · 구내냉동(냉장)물손해(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보험금 계산 방법	손해액×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의 80\%해당액}}$	손해액×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

보상방식 선택에 상관 없이 임차자(화재) 배상책임 특별약관은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경우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비례보상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상한도액}}{\text{보험가액}}$$

Q) 급배수누출손해(자기부담금 10%)(주택물건/일반물건) 특별약관은 무엇이고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A-1) 급배수누출손해(자기부담금 10%)(주택물건) 특별약관 및 급배수누출손해(자기부담금 10%)(일반물건) 특별약관은 보험의 목적이 급배수시설의 누수 또는 방수로 입은 직접손해의 90%를 보상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의 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
단,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A-2) 급배수누출손해(자기부담금 10%)(주택물건) 특별약관 및 급배수누출손해(자기부담금 10%)(일반물건) 특별약관의 면책기간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며, 약관에서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명시한 물건들(손해를 발생시킨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 자체 등)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계약내용이 다른 법률과 연계되어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계약의 경우 관련 법률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요?

A-1) 네, 있습니다. 계약내용이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님에 따라 관련 법률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②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③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④ ① 내지 ③ 이외의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⑤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A-2)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A-3) 회사는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립니다.

Q) 이 상품의 만기환급금 및 만기유지보너스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A-1) 회사는 이 보험의 기본계약 만기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리며,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등에 따라 실제 만기환급금은 최초 가입시 예시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납입보험료 중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2) 회사는 이 보험이 해지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지 않고,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기본계약 만기시점의 계약해당일)까지 유지된 경우 이 상품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만기유지보너스 금액을 만기환급금에 더하여 지급해 드립니다.

단, 만기유지보너스 금액은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여부 등에 따라 최초 가입시 예시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사가 중대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시점의 만기유지보너스 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 가입자격제한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2601.8)는 대중음식점, 목욕탕, 각종 도소매업 및 약국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와 종업원을 위한 보험입니다.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보험
기간</th><th>보험료
납입기간</th><th>가입
나이</th></tr>
<tr><td rowspan="4">기본
계약</td><td rowspan="3">·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
· 화재손해(영위업종적용)</td><td>3 년만기</td><td rowspan="3">전기납</td><td rowspan="3">제한
없음</td></tr>
<tr><td>5 년만기</td></tr>
<tr><td>10 년만기</td></tr>
<tr><td>· 상해 사망</td><td>3 년만기
5 년만기
10 년만기</td><td>전기납</td><td>만 15 세
~
80 세</td></tr>
<tr><td>선택
계약</td><td>· 붕괴 · 침강 및 사태손해
(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
(영위업종적용)(15 일면책)
특별약관
· 구내폭발 · 파열손해
(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 구내냉동(냉장)물손해
(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 차량 및 항공기로 인한 손해
(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 전기위험(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 비특수건물 유리 및 부착간판
풍수재손해(영위업종적용)
(15 일면책) 특별약관
· 점포휴업손해(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td><td>3 년만기

5 년만기

10 년만기</td><td>전기납</td><td>제한
없음</td></tr>
</table>

구 분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 나이
선택 계약	· 점포휴업(화재) 일당(1 일이상) 특별약관 · 점포휴업(화재,풍수재,붕괴 등) 일당(1 일이상)(풍수재 15 일면책) 특별약관 · 위조지폐손해 특별약관 · 도난손해(주택물건) 특별약관 · 도난손해(일반물건) 특별약관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 사회복지시설 종업원신체피해 배상책임 추가특별약관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특별약관	3 년만기	전기납	제한 없음
	· 보관자 배상책임(일반수탁물) 특별약관 · 음식물 배상책임 특별약관 · 음식물 배상책임Ⅱ 특별약관 · 임차자(화재) 배상책임 특별약관 · 가스사고 배상책임Ⅱ 특별약관 · 특수건물 신체손해 배상책임 (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 특수건물 화재대물 배상책임 (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 재난배상책임 특별약관 · 의약품 등 위험 배상책임 특별약관 · 약국시설 배상책임 특별약관	5 년만기		
	· 학교경영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 주차장 배상책임 특별약관 · 이 · 미용 배상책임 특별약관 · 차량정비업소 배상책임 특별약관 · 차량정비업소 배상책임Ⅱ 특별약관 · 학원 및 교습소 대인배상책임Ⅱ 특별약관 · 학원 및 교습소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 학원 및 교습소 치료비 추가특별약관 ·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Ⅱ 특별약관 · 실내 트램펄린 · 에어바운스 대인배상책임Ⅱ 추가특별약관	10 년만기		

구 분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 나이
선택 계약	· 산후조리원 대인배상책임 (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특별약관 · 산후조리원 대물배상책임 (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특별약관 ·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 10%)(주택물건) 특별약관 ·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 10%)(일반물건) 특별약관 · 노인요양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Ⅱ특별약관 · 노인요양시설 종업원신체피해 배상책임Ⅱ 추가특별약관 · 노인요양시설 전문인 배상책임Ⅱ 특별약관 · 재가 요양보호사 배상책임Ⅱ 특별약관 · 건물(화재) 복구비용지원 (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 시설(화재) 수리비용지원 (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 기계(화재) 수리비용지원 (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3 년만기 5 년만기	전기납	제한 없음
	· 상해 후유장해(80%이상) 특별약관 · 상해 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 상해 입원일당(1 일이상) 특별약관 ·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1 일이상) 특별약관 · 화상 진단비 특별약관 · 화상 수술비 특별약관 · 상해 입원 · 통원 수술비 특별약관 ·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 (비운전자용) 특별약관 · 깁스치료비(부목치료 제외) 특별약관 · 골절 진단비(치아파절(깨짐, 부러짐)제외) 특별약관 · 5 대골절 진단비 특별약관 · 5 대골절 수술비 특별약관 · 상해 척추손상 수술비 특별약관 · 특정 외상성 뇌손상 진단비 특별약관 · 특정 외상성 장기손상 진단비 특별약관 · 상해 관절(무릎 · 고관절)손상 수술비 특별약관 · 아킬레스힘줄손상 수술비 특별약관	3 년만기 5 년만기 10 년만기	전기납	만 15 세 ~ 80 세

구 분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 나이
선택 계약	· 상 · 하지 특정상해 수술비 특별약관	3 년만기	전기납	만 16 세 ~ 80 세
		5 년만기		
		10 년만기		
	·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 (운전자용) 특별약관 · 운전면허정지일당 특별약관 · 운전면허취소보장 특별약관	3 년만기	전기납	만 18 세 ~ 80 세
		5 년만기		
		10 년만기		
	·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3 년만기	전기납	만 19 세 ~
		5 년만기		
		10 년만기		
	·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 ·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 ·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	3 년만기	전기납	만 20 세 ~
		5 년만기		
		10 년만기		
	· 가족화재벌금 특별약관 ·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특별약관 ·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Ⅲ 특별약관	3 년만기	전기납	만 15 세 ~
	·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Ⅲ (누수사고제외) 특별약관 ·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Ⅲ (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특별약관	5 년만기		
	·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Ⅲ (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누수사고제외) 특별약관 · 6 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 · 12 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	10 년만기		

☞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직업, 직무, 해당 보험의 목적 건물급수, 관리상태, 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화재손해(영위업종적용)관련 보통약관, 특수건물 풍수재손해(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영위업종적용)(15 일면책) 특별약관, 붕괴 · 침강 및 사태손해(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구내폭발 · 파열손해(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구내냉동(냉장)물손해(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및 차량 및 항공기로 인한 손해(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은 가입 시 가입시점에 실손보상형과 비례보상형 중 선택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건물(화재) 복구비용지원(영위업종적용), 시설(화재) 수리비용지원(영위업종적용) 및 기계(화재) 수리비용지원(영위업종적용), 노인요양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Ⅱ, 노인요양시설 종업원신체피해 배상책임Ⅱ, 노인요양시설 전문인 배상책임Ⅱ, 재가 요양보호사 배상책임Ⅱ 특별약관은 기본계약 보험기간이 10 년인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기타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의 가입과 운영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이 상품의 사업방법서 별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구조

(1) 계약형태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자격제한 참조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3 개월납, 6 개월납, 연납

(2) 만기환급금

- 보장부분 : 없음
- 적립부분 :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한 금액에서 이미 중도인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만기까지 적립한 금액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25%)

(3) 만기유지보너스

가. 지급 대상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지 않고 라.에서 정한 만기유지보너스 발생일까지 유지된 계약

나. 지급 방식

회사는 다.에서 정한 만기유지보너스 금액을 라.에서 정한 만기유지보너스 발생일에 가.에서 정한 지급 대상 계약의 만기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기유지보너스 금액

보험기간 중 납입한 영업보험료 합계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영업보험료 합계액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 따른 보험료 할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할인전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라. 만기유지보너스 발생일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기본계약 만기시점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 중도인출

(1)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2 년이후 계약이 유효한 경우 매보험년도마다 4 회에 한하여 해당시점의 적립부분 해약환급금(“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중도인출금은 인출시점에서 차감되며, 기본계약 해약환급금이 적립부분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본계약 해약환급금을 한도로 함)의 80%한도 내에

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금과 이자합계액을 한도에서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품의 특이사항

(1) 이 상품은 보상방식을 실손보상형과 비례보상형 중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보험증권 기준으로 실손보상형을 선택한 경우 아래 특별약관은 모두 실손보상형으로만 가입 가능합니다.

· 화재손해(영위업종적용)관련 보통약관
· 특수건물 풍수재손해(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영위업종적용)(15일면책) 특별약관
·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 구내폭발·파열손해(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 구내냉동(냉장)물손해(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 차량 및 항공기로 인한 손해(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3) 보험증권 기준으로 비례보상형을 선택한 경우 아래 특별약관은 모두 비례보상형으로만 가입 가능합니다.

· 화재손해(영위업종적용)관련 보통약관
· 특수건물 풍수재손해(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영위업종적용)(15일면책) 특별약관
·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 구내폭발·파열손해(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 구내냉동(냉장)물손해(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 차량 및 항공기로 인1한 손해(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4) 실손보상형을 선택한 경우 보험의 목적에 따라 아래에 정한 가입금액 이하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의 목적	건물, 기계, 시설, 집기비품	동산
일반물건	총 가입금액 20억원	2억원
공장물건	총 가입금액 20억원	2억원

(5)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약관【별표-배상책임관련8】(「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한 다중이용업소)의 다중이용업주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관련 보통

약관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된 경우. 다만, 변경된 다중이용업주가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관련 보통약관 계약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다중이용업주가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관련 보통약관과 동일한 위험을 포함하는 계약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 폐업한 경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천재지변, 사고 등의 사유로 다중이용업주가 다중이용업을 더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 보험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6) 재난배상책임 특별약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단,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판정 시점은 해당 재난배상책임 특별약관 가입시점으로 합니다.

(7)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은「영업용운전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정지일당 특별약관 ·운전면허취소보장 특별약관

(8) 피보험자가 「비운전자」인 경우,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운전자용) 특별약관 ·운전면허정지일당 특별약관 ·운전면허취소보장 특별약관

(9)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기본계약 또는 선택계약) 상품의 경우, 해당 보험(기본계약 또는 선택계약)의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10) 다수의 보험의 목적을 추가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11) 다수의 피보험자를 추가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 보험금 지급사유

<table>
<tr><th>구분</th><th>보장명</th><th>지급사유</th><th>지급금액</th></tr>
<tr><td rowspan="3">기본계약</td><td>화재
(폭발포함)
배상책임Ⅱ</td><td>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3 조의 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한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함</td><td>대인(1 명당):
<table><tr><td>사망</td><td>1 억5,000 만원 한도</td></tr><tr><td>후유장애</td><td>1 억5,000 만원 한도</td></tr><tr><td>부상</td><td>3,000 만원 한도</td></tr></table>※ 단, 보험증권상 초과금액이 기재된 경우, 초과금액 한도

대물(1 사고당):
가입금액 한도</td></tr>
<tr><td>화재손해
(영위업종적용)</td><td>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 ·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택 및 주택 내 수용가재일 경우에는 폭발 ·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실손보상형 : 1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 비례보상형 :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인 경우는 해당비율로 가입금액 한도 내 보험금 지급</td><td rowspan="2">가입금액 한도</td></tr>
<tr><td>잔존물 제거 비용</td><td>화재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10% 한도로 보상

※ 잔존물 제거비용 :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 비용(차에 싣는 비용)
(단, 화재손해보험금과 더하여 가입금액 한도)</td></tr>
<tr><td></td><td>상해 사망</td><td>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td><td>가입금액</td></tr>
</table>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 (영위업종적용) (15 일면책)	비특수건물에 대하여 아래의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 위와 관련하여 재해방지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 실손보상형 :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 비례보상형 :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인 경우는 해당비율로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급	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보험가액의 2% 또는 50 만원 중 적은 금액)
	비특수건물 유리 및 부착간판 풍수재손해 (영위업종적용) (15 일면책)	비특수건물에 대하여 아래의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의 유리 및 부착간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 1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가입금액 한도
	전기위험 (영위업종적용)	전기적인 사고로 발전기, 변압기, 배전반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나 장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일 경우 해당비율로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급	가입금액 한도 (1 사고당 자기부담금 5 만원)
	구내폭발 · 파열손해 (영위업종적용)	구내에서 생긴 폭발 · 파열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실손보상형 : 1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 비례보상형 :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인 경우는 해당비율로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급	가입금액 한도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 (영위업종적용)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실손보상형 :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 비례보상형 :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인 경우는 해당비율로 가입금액 한도 내 보험금 지급	가입금액 한도
	구내냉동 (냉장)물손해 (영위업종적용)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의 화재로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파손, 변조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보험의 목적인 냉동(냉장)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실손보상형 :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 비례보상형 :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인 경우는 해당비율로 가입금액 한도 내 보험금 지급	가입금액 한도
	차량 및 항공기로 인한 손해 (영위업종적용)	차량의 충돌 및 접촉, 항공기의 추락, 접촉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이로 인한 폭발·파열 포함)으로 인해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실손보상형 :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 비례보상형 :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인 경우는 해당비율로 가입금액 한도 내 보험금 지급	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당해 물건가액의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
	점포휴업손해 (영위업종적용)	화재, 폭발, 파열 등으로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최초 3일까지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가입금액 한도
	점포휴업 (화재) 일당 (1일이상)	화재사고로 휴업을 하게 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2개월을 한도로 휴업일 1일당 일당지급)	가입금액
	점포휴업 (화재,풍수재, 붕괴 등) 일당 (1일이상) (풍수재 15일 면책)	아래의 사고로 휴업을 하게 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2개월을 한도로 휴업일 1일당 일당지급) - 화재, 폭발, 파열, 붕괴, 침강 및 사태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가입금액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건물(화재) 복구비용지원 (영위업종적용)		화재손해관련 보통약관에 정한 위험으로 건물에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건물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된 각각의 가액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의 차액을 보상	가입금액 한도
	시설(화재) 수리비용지원 (영위업종적용)		화재손해관련 보통약관에 정한 위험으로 시설에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시설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된 각각의 가액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의 차액을 보상	가입금액 한도
	기계(화재) 수리비용지원 (영위업종적용)		화재손해관련 보통약관에 정한 위험으로 기계에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기계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된 각각의 가액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의 차액을 보상	가입금액 한도
	위조지폐손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의 구내에서 위조지폐의 수취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도난손해 (일반물건)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 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금액 한도
	도난 손해 (주택 물건)	명기 가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명기가재)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구내에서 발생한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 명기가재는 반드시 보험증권에 명기하여야 보상 받을 수 있는 가재로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목형,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단,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인 경우 제외)	가입금액 한도
		일반 가재	보험의 목적(일반가재)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구내에서 발생한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가입금액 한도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30/50/100만원 선택가능)
	사회복지시설 종업원신체피해 배상책임 추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종업원(근로자)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30/50/100만원 선택가능)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 (화재(폭발포함) 배상제외)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제외	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30/50/100만원 선택가능)
	보관자 배상책임 (일반수탁물)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30/50/100만원 선택가능)
	임차자(화재) 배상책임	임차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이 임차건물 가액보다 작은 경우 비례보상	가입금액 한도
	음식물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5/10/30만원 선택가능)
	음식물 배상책임Ⅱ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대인/대물 1사고당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 각각 적용	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5/10/30만원 선택가능)

<table>
<tr><th>구분</th><th>보장명</th><th>지급사유</th><th>지급금액</th></tr>
<tr><td></td><td>가스사고
배상책임Ⅱ</td><td>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td><td>가입금액 한도</td></tr>
<tr><td></td><td>특수건물
신체손해
배상책임
(영위업종적용)</td><td>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가 발생한 경우</td><td>(1 명당)<table><tr><td>사망</td><td>1억5,000
만원 한도</td></tr><tr><td>후유
장해</td><td>1억5,000
만원 한도</td></tr><tr><td>부상</td><td>3,000 만원
한도</td></tr></table></td></tr>
<tr><td></td><td>특수건물
화재대물
배상책임
(영위업종적용)</td><td>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가 발생한 경우</td><td>가입금액 한도</td></tr>
<tr><td></td><td>재난배상책임</td><td>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td><td>대인(1 명당):<table><tr><td>사망</td><td>1억5,000
만원 한도</td></tr><tr><td>후유
장애</td><td>1억5,000
만원 한도</td></tr><tr><td>부상</td><td>3,000 만원
한도</td></tr></table>대물(1 사고당):
10 억원 한도</td></tr>
<tr><td></td><td>약국시설
배상책임</td><td>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약국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td><td>가입금액 한도
(1 사고당
자기부담금
10 만원)</td></tr>
<tr><td></td><td>의약품 등
위험 배상책임</td><td>피보험자가 의약품 등을 타인에게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 등에 의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힌 결과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td><td>가입금액 한도</td></tr>
</table>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학교경영자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교시설이나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1 사고당 자기부담금 대인,대물 각각 10 만원)
	주차장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1 사고당 자기부담금 30/50 만원 선택가능)
	이·미용 배상책임	이·미용실 구내에서 행하는 이·미용 업무와 관련된 이용사, 미용사의 직업상의 과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두피를 제외한 얼굴 및 피부미용에 관한 행위는 미포함	가입금액 한도 (1 사고당 자기부담금 10 만원)
	차량정비업소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량정비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1 사고당 자기부담금 10/30/50/100 만원 선택가능)
	차량정비업소 배상책임Ⅱ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량정비업무(정비의 목적으로 차량을 수탁, 시험운전,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1 사고당 자기부담금 10/30/50/100 만원 선택가능)
	학원 및 교습소 대인배상책임Ⅱ	피보험자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시설이나 학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1 사고당 자기부담금 10 만원)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학원 및 교습소 구내치료비 추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학원시설 구내에서 우연한 사고로 시설물의 이용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1 사고당 자기부담금 없음/1/2/3/5/10 만원 선택가능)
	학원 및 교습소 치료비 추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시설물의 이용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1 사고당 자기부담금 없음/1/2/3/5/10 만원 선택가능)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Ⅱ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1 사고당 자기부담금 10 만원)
	실내 트램펄린·에어바운스 대인배상책임Ⅱ 추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트램펄린, 에어바운스와 관련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힌 결과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1 사고당 자기부담금 10 만원)
	산후조리원 대인배상책임 (화재(폭발포함) 배상제외)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발생된 아래 각 호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1.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 2. 음식물(피보험자가 조리, 가공, 판매 또는 공급한 모든 식품류를 말함)이 타인에게 제공된 후 보험기간 중에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	가입금액 한도 (1 사고당 자기부담금 10 만원)
	산후조리원 대물배상책임 (화재(폭발포함) 배상제외)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1 사고당 자기부담금 10/30/50/100 만원 선택가능)
	노인요양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Ⅱ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0/250/500 만원 선택가능)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노인요양시설 종업원신체피해 배상책임Ⅱ 추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종업원(근로자)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0/250/500 만원 선택가능)
	노인요양시설 전문인 배상책임Ⅱ	피보험자가 사회복지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노인요양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0/250/500 만원 선택가능)
	재가 요양보호사 배상책임Ⅱ	피보험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요양보호사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한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0/250/500 만원 선택가능)
	급배수시설누출 손해(자기부담금 10%)(주택물건)	보험의 목적의 수조, 급배수시설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가 발생한 경우 ※ 단, 건물은 재조달가액 기준, 가재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 계산	가입금액 한도로 손해액의 90% ※90 日 면책
	급배수시설누출 손해(자기부담금 10%)(일반물건)	보험의 목적의 수조, 급배수시설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가 발생한 경우 ※ 단, 건물, 시설 및 기계장치는 재조달가액 기준, 그 외 보험의 목적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 계산	가입금액 한도로 손해액의 90% ※90 日 면책
	상해 후유장해 (80%이상)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초 1 회한)	가입금액
	상해 후유장해 (3~100%)	상해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상해 입원일당 (1 일이상)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1 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 일을 한도로 입원 1 일당 일당지급)	가입금액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 (1 일이상)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의 중환자실에 1 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 일을 한도로 입원 1 일당 일당 지급)	가입금액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보장명</th><th>지급사유</th><th>지급금액</th></tr>
<tr><td rowspan="11"></td><td colspan="2">화상 진단비</td><td>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td><td>가입금액</td></tr>
<tr><td colspan="2">화상 수술비</td><td>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td><td>가입금액</td></tr>
<tr><td colspan="2">골절 진단비
(치아파절(깨짐, 부러짐)제외)</td><td>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치아파절(깨짐,부러짐)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td><td>가입금액</td></tr>
<tr><td colspan="2">5대골절
진단비</td><td>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td><td>가입금액</td></tr>
<tr><td colspan="2">5대골절
수술비</td><td>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td><td>가입금액</td></tr>
<tr><td colspan="2">깁스치료비
(부목치료 제외)</td><td>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 정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 부목치료(Splint Cast)는 제외</td><td>가입금액</td></tr>
<tr><td colspan="2">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
(운전자용)</td><td>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상해등급별 차등 지급)</td><td rowspan="2"><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table><tr><th>상해등급</th><th>지급액</th></tr><tr><td>1급</td><td>1,000만원</td></tr><tr><td>2급</td><td>600만원</td></tr><tr><td>3급</td><td>400만원</td></tr><tr><td>4급</td><td>300만원</td></tr><tr><td>5급</td><td>150만원</td></tr><tr><td>6급</td><td>80만원</td></tr><tr><td>7급</td><td>40만원</td></tr><tr><td>8~11급</td><td>20만원</td></tr><tr><td>12~14급</td><td>10만원</td></tr></table></td></tr>
<tr><td colspan="2">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
(비운전자용)</td><td>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상해등급별 차등 지급)</td></tr>
<tr><td rowspan="2">상해
입원·
통원
수술비</td><td>상해
입원
수술비
(당일
입원
제외)</td><td>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지급)
※「당일입원」이라 함은 입원일자와 퇴원일자가 동일한 입원을 말함</td><td>가입금액</td></tr>
<tr><td>상해
통원
수술비
(외래
및 당
일
입원)</td><td>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에 외래로 방문하거나 당일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지급)
※「당일입원」이라 함은 입원일자와 퇴원일자가 동일한 입원을 말함</td><td>가입금액</td></tr>
</table>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 척추손상 수술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척추손상으로 진단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특정 외상성 뇌손상 진단비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특정 외상성 뇌손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
	특정 외상성 장기손상 진단비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특정 외상성 장기손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
	상해 관절(무릎·고관절) 손상 수술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무릎관절손상 또는 고관절손상으로 진단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아킬레스힘줄손상 수술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아킬레스힘줄손상으로 진단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상·하지 특정상해 수술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상·하지 특정상해로 진단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운전면허정지 일당	영업용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하여 운전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면허정지기간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면허정지기간 1일당 일당 지급) ※ 면허정지기간이라 함은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전체 면허정지기간 에서 감경 받았거나 감경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말함	가입금액
	운전면허취소 보장	영업용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하여 운전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호사선임비용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을 죄명으로 아래 ① 또는 ②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지급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②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을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가입금액 한도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었을 때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한함	· 변호사비용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단, 1,500만원 한도) ·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행정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었을 때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 변호사비용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단, 1,500만원 한도) ·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었을 때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한함	· 변호사비용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 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단, 1,500만원 한도) ·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가족화재벌금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이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형법 제170조에 의한벌금: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에 의한벌금: 2,000만원 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경우	2,000만원 한도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Ⅲ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피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인, 대물 각 1억원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단, 누수사고인 경우 50만원)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Ⅲ (누수사고제외)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피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누수사고로 인한 대물 배상책임은 제외	대인, 대물 각 1억원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Ⅲ (화재(폭발포함) 배상제외)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피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제외	대인, 대물 각 1억원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단, 누수사고인 경우 50만원)

<table>
<tr><th>구분</th><th>보장명</th><th>지급사유</th><th>지급금액</th></tr>
<tr><td></td><td>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Ⅲ
(화재(폭발포함) 배상제외)
(누수사고제외)</td><td>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피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제외
※ 누수사고로 인한 대물 배상책임은 제외</td><td>대인, 대물 각 1억원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td></tr>
<tr><td></td><td>6대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td><td>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6대가전제품이 전기적·기계적인 원인으로 고장이 발생하여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수리한 경우

※ 6대가전제품 제품보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보상

6대 가전제품 : 주택에서 사용하는 TV, 세탁기, 냉장고(특정용도 냉장고는 제외),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td><td>매년 1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 60日 면책</td></tr>
<tr><td></td><td>12대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td><td>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12대가전제품이 전기적·기계적인 원인으로 고장이 발생하여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수리한 경우

※ 12대가전제품 제품보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보상

12대 가전제품 : 주택에서 사용하는 TV, 세탁기, 냉장고(특정용도 냉장고는 제외),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td><td>매년 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 60日 면책</td></tr>
</table>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①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 가족화재벌금,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호사선임비용,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 10%)(주택물건),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 10%)(일반물건) 및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등은 다수계약(공제 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③ 하나의 상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④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산출기초 및 공시이율

□ 보험료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보험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 적용이율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란?

보험회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대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는데 보험료 납입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에는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보험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러한 할인율을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부분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공시이율이란?

이 보험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산출방법은 인터넷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2601.8)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상품의 보장부분 적용이율은 연단위 복리 2.75%입니다.

이 보험의 적립부분 순보험료는 공시이율(보장성 공시이율Ⅴ 적용)에 의해 연동되어 적립되며, 2026년 1월 현재 적용되는 이율은 연단위 복리 1.70%입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25%입니다.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최저보증이율이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 적용위험률

적용위험률이란?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 적용위험률 예시 >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 일반음식점 기준)

보장위험	적용위험률	
	500㎡ 이하	500㎡ 초과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위험률(10㎡당)	346	138

(화재손해, 일반음식점 기준)

보장위험	적용위험률			
	1급	2급	3급	4급
화재손해위험률(건물)	0.000345	0.000715	0.001056	0.002393

(일반상해사망률, 상해 1급, 40세 기준)

보장위험	적용위험률	
	남자	여자
상해 사망	0.000169	0.00008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 보험가격지수

□ 보험가격지수

● 산출식 : “영업보험료 ÷ (참조순보험료 + 상품군별 평균사업비) × 100”

보험가격지수란?

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평균공시이율 및 참조 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상품군별로 손해보험상품 전체의 평균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기준: 40 세, 상해 1 급, 아파트 1 급, 100 ㎡, 10 년만기, 10 년납, 월납)

남자(%)	여자(%)
151.6	156.3

●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2601.8)는 무배당 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순보험료식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장성보험 예상 해약환급금(률)

- 가입기준

• 5년만기 5년납, 일반음식점(한식), 건물급수 1급, 165㎡, 연간매출액 1억원, 도시가스 기준, 가스시설 지하에 있지 않음, 상해1급, 남자 40세, 월납 50,000원 납입시
• 기본계약 :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
(대인 : 1명당 사망 및 후유장해 1억5,000만원한도, 부상 3,000만원한도, 대물 : 1사고당 1억원한도)
화재손해(영위업종적용)
(건물 5,000만원, 집기비품(실손) 1,000만원, 동산(실손) 2,000만원),
상해 사망 5,000만원
선택계약 : **전기위험(영위업종적용)** 100만원 한도(1사고당 자기부담금 5만원),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1인당 1,000만원 한도, 1사고당 1억원 한도),
음식물 배상책임Ⅱ(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1인당 500만원 한도, 대인/대물 1사고당 5,000만원 한도),
가스사고배상책임Ⅱ(도시가스 기준, 가스시설 지하에 있지 않음)
(대인사고 1인당 사망 1억5천만원 한도, 부상 3,000만원 한도 대물사고 1사고당 3억원 한도),
임차자(화재) 배상책임(1억원 한도),
상해 후유장해(3~100%) 5,000만원,
골절 진단비(치아파절(깨짐,부러짐)제외) 30만원,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1만원

(단위 : 원,%)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예상 해약환급금(률)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연단위복리 1.70% 가정시[주1]		연단위복리 1.70% 가정시[주2]	
		예상 해약환급금	환급률	예상 해약환급금	환급률	예상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600,000	218,096	36.3	220,461	36.7	220,461	36.7
2년	1,200,000	541,590	45.1	550,732	45.8	550,732	45.8
3년	1,800,000	865,539	48.0	885,956	49.2	885,956	49.2
4년	2,400,000	1,190,049	49.5	1,226,326	51.1	1,226,326	51.1
5년	3,000,000	1,635,116	54.5	1,691,928	56.4	1,691,928	56.4

주1) 상기예시된 [연단위 복리 1.70% 가정 시]는 당월 공시이율(2026년 1월 현재 연단위 복리 1.70%)을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입니다.

2) 상기예시된 [연단위 복리 1.70% 가정 시]는 평균공시이율(2026년 현재 연단위 복리 2.50%)과 당월 공시이율 (2026년 1월 현재 연단위 복리 1.70%) 중 낮은 이율을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입니다.

3) 실제 해약환급금(률)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2026년 1월 현재 연단위 복리 1.70%)을 적용하고, 보장부분의 해약환급금을 더한 금액으로,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중도인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25%로 합니다.

4) 상기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5) 위 표의 보험기간 만기시점 예상해약(만기)환급금에는 예상만기유지보너스 금액(보험기간 중 납입한 영업보험료 합계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함께 표기되어 있습니다.

6) 회사는 해지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지 않고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만기유지보너스 발생일)까지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 만기유지보너스 금액을 지급합니다.

7) 실제 지급되는 만기유지보너스 금액은 보험기간 중 실제 납입한 영업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계약내용의 변경, 실제 보험료 납입금액 등에 따라 상기 예시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계약자가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사가 중대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만기유지보너스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파산선고로 인한 계약 해지시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파산선고 당시 만기유지보너스 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9)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당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 공시이율이며, 2026년 현재 2.50%입니다.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주요 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며, 보다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2601.8)의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